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8. (15일간)
3. 대 상 자 : 66하***2 외 68대
4. 기타사항

가. 납부의무자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교통행정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은행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고,

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이(1.2%)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조치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문의처 :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043-539-3724, 3726)

붙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020년 2월 4일

충 청 북 도 진 천 군 수

